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 등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결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서비스 모델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 (지원 규모) 총 7억여원 + @

* 비용지원형은 5개 내외, 기회제공형은 3개 내외 과제 선정

☐ (사업 기간) 협약일 ~ '24. 12. 31. (약 8개월)

☐ 사업 목적

-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 현장에서 이용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

* 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외에도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취약계층을 포함(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고위험자,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한 기업에는 첨단 복지기술·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제품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

☐ 사업 내용

- 新기술(디지털, IT, AI 등) 및 제품('돌봄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에서 제공해 보고 효과 검증 및 민간 부문의 이용을 유도

-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서비스 제공과정 효율화 또는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공모·선정
- 선정된 기업에는 해당 기술·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 마련 지원, 지자체 연계 및 이용자 모집 등을 통한 실증기회 제공, 실증에 필요한 비용(비용지원형에 한정) 등 지원

2 공모 계획

□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 기간) '24. 2. 28.(수) ~ '24. 3. 18.(월)
- (서류제출 기한) '24. 3. 11.(월) 09:00 ~ '24. 3. 18.(월) 18:00
※ 기한 전 또는 이후에 제출된 건은 무효로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기한 엄수
- (공모 방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kkgy1225@korea.kr)으로 사업신청서 및 요구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
※ 메일 제목은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신청”으로 명시

□ 지원유형 및 지원사항

- (지원 유형)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 1'하여 신청

구분	내용
비용 지원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결합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지원, 이용자 모집, 지역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연계 등(과제당 1~2억원) * 비용은 기업에 직접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며, 서비스 제공시, 제품 및 기술 이용료로 주로 지원됨
기회 제공형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고, 정부는 지자체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 및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 지원(과제당 1천만원 내외)

※ 1개의 기관에서 1개 이상의 과제 제출이 가능하며, 지원유형도 기술별로 다르게 선택하여 공모 가능(단, 기술별 주관기관 책임자는 달라야 함)

○ 지원사항

1) 공통 사항(비용지원형 및 기회제공형 공통사항)

- 선정된 기술·제품에는 실증 및 현장 활용 기회가 제공되며, 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한해 보건복지부 실증확인서 및 2025년 계속지원 여부 검토 등 기회가 주어짐

< 현장활용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활용(예시) >

- 기술이용료 월 2백만원 × 5개 제공기관 × 8개월 = 80백만원
- 매월 제공인력 교육비 1백만원 + 기타 운영비 1백만원 등 = 월 2백만원

2) 비용지원형

- 비용지원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일정 수의 이용자(또는 '시설')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제공에 드는 기술 이용료 또는 임차료(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인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지원예산은 기술 이용료 또는 제품 임차료 명목이며, 선정 기술의 인건비, 직접비(장비, 재료, 보험, 실증제품 설치운영 등), 간접비 등에 사용 가능

- 1 ~ 2억원의 사업 규모로 지역에서 모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예산은 최종 선정 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3) 기회제공형

- 기회제공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일정 수의 이용자(또는 '시설')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자 모집 및 사업 추진과정을 지원
- 지역에서 모집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됨에 투입되는 기술 이용료 또는 제품 임차료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식

○ (지원규모) 총 7억여원+@

- 비용지원형은 5개 내외, 기회제공형은 3개 내외 과제 선정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며(4~11월*), 12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 지원은 11월 종료 예정이나, 8개월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상황을 감안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24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25년 계속지원 검토
- '25년 사업추진 여부는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①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제품 +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 ② 바로 국민에 제공될 수 있는 TRL(기술성숙도) 8단계 이상의 기술(또는 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기술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제품은 실증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을 요함
- ③ 지원신청 시, 해당 기술·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A어플을 활용해 서비스 질 제고: 인정
B 돌봄로봇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결해 응급상황에 대응: 인정
C 식사지원 보조기기를 이용자에 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요건

1) 신청자격

- ①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 증진 또는 ②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 +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등
 - ※ 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외에도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새로운 취약계층 포함(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고위험자, 가족돌봄청년 등)
- ①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또는 ②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컨소시엄
 - ※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도 가능/ 컨소시엄 구성 시, 협약 등을 통해 공모에 참여

- (주관기관)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실증 수행을 위한 명확한 역할을 신청서에 명시하고 협약서 등 증빙 자료 제출

구분	관련근거
산(기업)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학(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호의 학교 및 산학협력단
연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주관기관책임자)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소속된 자로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복수 주관은 불가

* 주관기관·공동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2) 기본원칙

- ① 실증대상물(기술·제품 또는 서비스)은 반드시 주관기관이 보유, 기술 개발이 완료된 **TRL(기술성숙도) 8단계*** 이상으로 실증장소에 선정일로부터 1개월 내 설치 또는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단계

②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평가위원회 확인 결과
개발 중이거나 중복지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실증대상이 개발 중이지 않을 것(개발 완료 후 신청)

< 제외 기준 >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기관이 사업수행 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지원 제외 요건 및 사업별 지원 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붙임5 참조]

○ 심사 일정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사업수행 지역 매칭	최종 선정
복지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복지부, 지자체	복지부
2~3월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4월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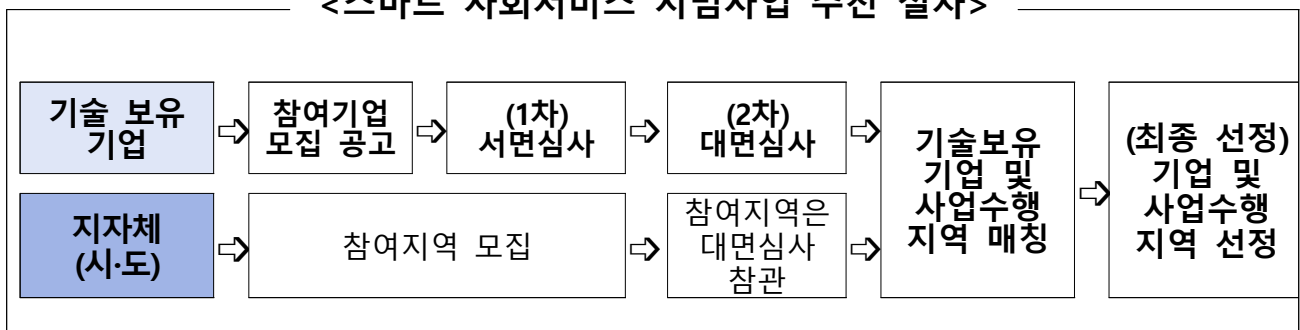
※ 사업별 대면심사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kcpass.or.kr, 알림마당-전체공지)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추진 절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절차>



□ 심사 기준

○ 서류 확인

- 필수서류의 적격성 여부,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 제외 여부 등 적부를 심사해 기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진행

구분		주요 내용
필수서류 적격성		• 첨부 서류의 적정성(서류 1~8번)
신청자격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 기업 및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는 경우
	참여 제한 여부	• 참여 기업 및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붙임5]

○ 1차 서면심사

- 기술 보유기업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적절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대면심사

- 기술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 구성 및 서비스 연계성,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발표를 할 수 없을시, 평가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발표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을 제출해야 함

○ 1·2차 선발 기준

-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과제 중 득점순에 따라 선발

$$\text{평가 평점 산식} = \frac{\text{평가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수} - 2}$$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최종 선정 : 사업 수행 지역 매칭

-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2차 심사를 통과한 건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제공할 기술(제품)을 선정
- 2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술개발이 완료된 시제품을 실증하는 사업 특성상 “기술개발”이 아닌 “실증”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중이나 수행 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 의뢰에 의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 요청받는 경우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¹⁾	대상		비고
		주관	공동	
1	사업신청서	○	×	붙임 1
2	사업제안서	○	×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	○	붙임 3
4	실증대상 적용기술의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서류	○	×	-
5	TRL 8단계 이상 증빙서류	○	×	인증서 등
6	인증서류 ³⁾	○	×	-
7	차별성검토 엑셀 파일 및 검색결과증(PDF) ⁴⁾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발급
8	제재정보 확인서 ⁵⁾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발급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
9	기술·제품에 대한 개요자료	○	×	-
10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 본 제출
11	법인등기부등본	○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12	최근 3년(21~23년) 회계감사보고서 ²⁾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 (날인본 표지 포함)	○	○	-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 본 제출
14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	○	재직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본 제출
15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본 제출
16	기타 성과 증빙서류(해당 시)	○	○	지적재산권 등 보유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1)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2) '23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또는 2021, 2022년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 3) 제품의 안전 및 상용화를 위해 취득한 인증서류(GMP, KC, KS, 전자파, 의료기기, 통신 등) 제출 필수(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업계획서 내 인증 취득 예상일자 기재)
-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화면에서 차별성 검토 진행 후 엑셀파일과 검색결과증(PDF) 파일 저장 후 제출
-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 MY제재확인하기 화면에서 본인제재확인 클릭하여 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후 제출

□ 관련 문의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9, 044-202-3221
	givemeyes@korea.kr
	kkjy1225@korea.kr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

유형	☐ 비용지원형				☐ 기회제공형			
주관 기관	기 관 명				대 표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실무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공동 참여 기관 (해당시 작성)	기 관 명				대 표			
	주 소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실무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화			
성명			이메일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00일

주관기관책임자 (인)
신청기관의 장 (직인)
공동참여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제안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 사업 계획 요약(요약은 2p 내 작성)

사 업 명			
신청유형		☐ 비용지원형 ☐ 기획제공형	
기관명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 대학 산학협력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동참여기관	공동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작성	
1. 기관 자격	기관의 적절성	- 장점, 보유 인프라 등 작성	
	기술 또는 제품 개요	- 현재 TRL단계, 기구축 인프라 보유 현황, 기술 또는 제품 소개 등 작성 (제공 장소 등 작성 가능한 서비스 내용, 인프라 등)	
2. 사업 개요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서비스 대상 포함(1인 가구, 고령자, 가족돌봄청년 등)	
	기대 효과		
3. 서비스	서비스 활용 방안 제안	- 사회서비스와의 결합 제공방안	
4. 예산	소요 예산(단위: 천원)	- 이용료, 유지보수비용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예산을 비목별로 작성	
5. 성과 관리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
	1.		
	2.		
6. 환류	사후 관리 및 계획	- B2C 계획 등 사후 기업 추진 목표 - 이용자 인터뷰, 모니터링 등 피드백 방안	

□ 세부 추진계획

I. 기관 개요 및 자격

1. 기관 개요

- 기관설립 목적 및 연혁
 - 정관에서 정한 기관설립 목적, 기관 주요 연혁 기술
- 주요 사업 및 활동 내역
 - '24년도 기관 주요 사업 포함

2. 기관 설립형태

- 기관의 사업 신청자격 (산/학/연) 구분하여, 충족 여부 기재
 - ※ 자격 증명을 위한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등 별첨

3.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성

- 해당 기관이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의 적절성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인프라(생산시설, 산업재산권 등)
 - ※ 기관 구성원, 내부 규정 등 관련 증빙자료 자유롭게 첨부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개요, 우수성, 사업성 등 시범사업 관련 내용 기재
-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사전 조사 또는 준비사항

4. 조직 역량

- 동 업무를 전담할 내부 조직 및 인력 구성안(현재 및 향후 계획 포함)
 - 인원 수, 상근/비상근 여부, 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 전문성(학력, 관련 업무 및 연구 경험, 근무년수 등), 업무 분장 등 가급적 상세히 기술
 -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과 과제수행능력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 기술

□ 기관 현황

- 사업책임자 등 현황(대표 및 경영진 전문성)

(예시)

(1) 주관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성명		휴대폰 번호	
			국가연구자 번호	
직장	기관명		내선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나. 관련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2) 공동참여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성명		휴대폰 번호	
			국가연구자 번호	
직장	기관명		내선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나. 관련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3) 지원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최종 학위	전공	취득 연도	

(4) 기타 기관(역할:)

책임자	기관명		내선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실무 담당자	기관명		내선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5. 그 간 사업실적

○ 중앙부처(또는 지자체) 주관 공모 사업수행 및 연구(사업) 실적 등

□ 연구(사업) 실적(주관기관 기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 기간 (참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 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6. 기관 재정건전성 및 회계관리 투명성

○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 재정건전성 : (보유자금-보유부채)/기관 총 비용
- 재정독립성 : (기관 총수입- 국고보조금)/기관 총 수입

○ 예산편성·집행·결산 관련 **기준 및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회계 관련 규정, 회계담당인력 명단 및 업무분담,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내역 등 요약 기술 및 증빙자료 첨부

II. 세부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기술 실증 단계별 추진 전략 등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 ※ 사업대상자(지역)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2차년도에 적합한(실행가능한) 계획 제시
단, 2차년도 제공계획이 없는 경우 1차년도만 기재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 작성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2.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추진계획

- 지자체 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예시) 제시
 - 제공 기간, 횟수, 단위시간, 제공 장소 등 작성 가능한 내용 기술
- 지원신청 시, 해당 기술·제품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예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A어플을 활용해 서비스 질 제고: 인정
 - B 돌봄로봇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결해 응급상황에 대응: 인정
 - C 식사지원 보조기기를 이용자에 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상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대상 설정 및 기준 기술

3. 안전성 확보방안

- 기술 적용 시 주의사항, 모니터링, 안전 교육,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안전확보계획 제시

4. 예산(지원금) 투입 및 운용 계획

- 서비스 대상의 규모를 추계·분석
 -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제시
 - (비용 제공형) 필요한 지원금액 및 운용 계획을 비목별로 제시하고, 편성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함께 기재
 - (기회제공형)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서비스 이용료 등) 및 그 외 사업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재원 투입 계획 작성
- ※ 재원에 관한 부분은 도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5. 추진체계도

○ 예시



III. 성과관리 및 사업화 계획

1.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 사업목표 및 계획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간접 효과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 성과목표 산출근거 및 산정방법 (2개 이상 제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 방안 및 체계, 평가 결과 환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추후 지역사회서비스와의 결합, 신규 표준모델 편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이용자 인터뷰, 모니터링 등 방안

3. 사업화 계획(지원 종료 이후)

- 시범사업 지원 종료 후 사업화 계획 작성
- 기술 또는 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 사업화 전략
- 사업모델 경쟁력
- 차별성, 확장성, 홍보계획 등
- 향후 사업화·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제시, B2C 계획 등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신청을 위한 정보 수집

☐ 수집·이용할 항목

구 분	개인정보 항목
신청기관	총괄 과제책임자의 성명, 부서, 직위, 휴대폰번호, 내선전화, 이메일, 학력 등
	사업참여 인력의 성명, 부서, 직위 등
공동연구 개발기관	책임자의 성명, 부서, 직위, 휴대폰번호, 내선전화, 이메일, 학력 등
	사업참여 인력의 성명, 부서, 직위 등

☐ 수집방법: 전자우편(메일)

☐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 보유 및 이용기간: 12개월

○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참여 인력 모두 작성)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 3. .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 **서면 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기술 보유기업의 우수성 (30점)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10) ○ 기업 인프라(인력, 생산능력, 운영능력 등)의 우수성(10) ○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10)
기술 실증계획의 적절성 (40점)	○ 과제구성의 적절성 및 실증목표의 구체성(10) ○ 실증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10) ○ 추진전략 및 추진 일정의 현실성 및 구체성(10) ○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도(10)
성과 및 환류 (20점)	○ 사업 목표, 범위, 추진전략 등 도달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10) ○ 사후관리 계획(이용자 인터뷰, 모니터링 등)의 적정성(10)
사회서비스 고도화 (10점)	○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제공인력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 정도(10)

☐ **대면 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기술의 적정성 (40점)	○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기술의 사회서비스 연계성 및 적합성(10) ○ 실증을 통한 기술개발 확장성(사업화 연계성 및 산업발전 효과 등)(10) ○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10)
사업 수행능력 (40점)	○ 사업 결과의 확장성(10) ○ 사업화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구체성(10) ○ 제품의 생산·운영 능력(10) ○ 참여 인력 투입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10)
사업비 구성 및 서비스 연계성 (20점)	○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10) ○ 사업모델의 활용성(10)

구분	내용
기관 자격	- 신청기관 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서비스 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접수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중복 여부	- 신청된 세부 서비스 제공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공모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
의무사항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희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제,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 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희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구분	내용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지원 제외 적용 예외 대상 (접수 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기타	- 기타 본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

기술성숙도(TRL) 개념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지표
 - TRL 도입은 R&D단계별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기준 설정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

< TRL 단계별 정의 >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 R&D 사업	
단계	정의 (OECD)	TRL 단계	단계별 정의
기초 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1	기본원리발견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응용 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3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등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 R&D 사업	
단계	정의 (OECD)	TRL 단계	단계별 정의
		5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등
개발 연구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6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등
		7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 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 허가 등
-	실용화/기술이전사업	9	상용제품생산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